

(第12回－文化教育第1次)

<p>이同年 11月 10日 議長으로부터 우리 委員會에 각각 回附되었습니다.</p> <p>1994年 11月 11日 서울特別市教育監이 提出한 1994年度 追加更正豫算案과 1995年度豫算案이 같은 날 議長으로부터 우리 委員會에 回附되었습니다.</p> <p>1994年 11月 10日 서울特別市教育監이 提出한 서울特別市教育監 所屬 地方公務員服務條例改正條例案과 서울特別市立學校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, 그리고 서울特別市教育·學藝에 關한各種手數料徵收條例案이 同年 11月 14日 議長으로부터 우리 委員會에 回附되었습니다.</p> <p>1994年 11月 14日 松坡區 風納洞 78-6에 居住하는 경종문 외 60人이 金鍾雄議員紹介로 提出한 風納土城復元區域內 未補償部分 補償要求請願書가 同年 11月 15日 議長으로부터 우리 委員會에 回附되었습니다.</p> <p>1994年 11月 23日 江南區 驛三洞 743-11에 居住하는 김장원 외 8人이 趙文晉議員紹介로 提出한 江南區 水西地區 公共圖書館 建立要求請願書가 같은 날 議長으로부터 우리 委員會에 回附되었습니다.</p> <p>이상으로 報告를 마치겠습니다.</p> <hr/> <p>1. 1994年度文化觀光局所管(教育廳轉出金包含) 서울特別市一般會計歲入·歲出第1回追加更正豫算案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10時 19分)</p> <p>○委員長 李詰鎬 議事日程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議事日程 第1項 1994年度 서울特別市一般會計歲入·歲出 第1回 追加更正豫算案을 上程합니다.</p> <p>(議事棒 3打)</p> <p>文化觀光局長 나오셔서豫算案에 대한 提案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.</p> <p>○文化觀光局長 孫長鎬 文化觀光局長입니다. 연일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追更審議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委員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.</p> <p>.....</p> <p>(報 告)</p>	<p>□ 먼저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.</p> <p>○ 한국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은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연구, 국제교류사업의 지원 및 자치단체 공무원의 해외연수를 목적으로 내무부 주관하에 '94년 7월 민법상의 재단법인 형태로 설립되었습니다.</p> <p>○ 동재단은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의 15개 시도와 263개 시·군·구가 연합하여 설립한 것으로써 서울특별시장은 이재단의 회장으로 백창현 시의회 의장님은 부회장으로 각각 선임된 바 있습니다.</p> <p>○ 동재단에서는 설립재원으로 '94년중 61억원을 조성할 계획이며, 재단설립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일반회계 예산규모를 기준으로 재단기금출연을 요청하였으며, 이중 우리시에 본청 5억, 자치구 5억2천 등 총 10억2천만원의 기금출연을 요청해왔습니다.</p> <p>○ 재단기금 출연요청에 대하여, 총 278개 지방자치단체중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자치단체를 제외한 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미 재단 기금을 출연하여 53억을 조성한 상태임을 보고 드립니다.</p> <p>□ 다음은 서울시 교육청 전출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</p> <p>○ 금번 추경예산안의 교육청 추가 전출규모는 총 874억 43백만원으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-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1항에 의한 공립교원의 봉급 추가 부담으로 574억 4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. 이는 '93.12.31 공무원보수 규정개정에 의한 종전 직무수당의 봉급에 의한 합산분으로 '94당초예산 1,436억 6백만원의 40%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.</li><li>- 같은 법 제12조제2항개정('93.12.31)으로 '94년부터 담배소비세 전출비율이 30%에서 45%로 상향조정됨에 따라</li></ul>
--	---

<p>생긴 차액 643억 8백만원중 일부인 3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.</p> <p>이는 시 재정사정으로 인한 부득이한 조치로써 부족전출액은 금년도 담배소비세 세입결산후 추후 정산토록 하겠습니다.</p> <p>.....</p> <p>이상 報告事項을 마치겠습니다.</p> <p>○委員長 李喆鎬 다음은 專門委員 檢討報告가 있겠습니다.</p> <p>○專門委員 金長虎 專門委員 金長虎입니다.</p> <p>지금부터 1994年度 서울特別市一般會計歲入·歲出第1회追加更正豫算案에 대하여 檢報告드리겠습니다.</p> <p>.....</p> <p>(報 告)</p> <p>1994년도서울특별시일반회계세입·세출제1회추가 경정예산(안)증문화관광국소관검토보고서</p> <p>1. 제안경위</p> <p>이 예산(안)은 1994년 11월 9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4년 11월 10일 소관별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.</p> <p>2. 예산규모</p> <p>가. 세 입 : 없음</p> <p>나. 세 출 : (단위 : 천원)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'94추가경정예산(안)</th> <th>'94기정예산</th> <th>증감액</th> <th>증감비(%)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49,366,237</td> <td>48,866,237</td> <td>500,000</td> <td>1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3. 예산내용</p> <p>○ 세출예산 (단위 : 천원)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과 목</th> <th>예산(안)</th> <th>기정예산</th> <th>산술기초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문화예술 진흥비</td> <td>49,366,237</td> <td>48,866,237</td> <td>500,000</td> </tr> <tr> <td>  관광 및 국제교류</td> <td>1,732,147</td> <td>1,232,147</td> <td>500,000</td> </tr> <tr> <td>    국제교류</td> <td>1,331,232</td> <td>831,232</td> <td>500,000</td> </tr> <tr> <td>    국제교류</td> <td>1,331,232</td> <td>831,232</td> <td>500,000</td> </tr> <tr> <td>  출연금</td> <td>500,000</td> <td>0</td> <td>500,000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4. 검토의견</p> <p>○ 내무부에서 민법 제32조에 의거 재단법인으로 설립한 『지방자치단체국제교류재단』에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에 의하여 출연하는 기금임.</p>	'94추가경정예산(안)	'94기정예산	증감액	증감비(%)	49,366,237	48,866,237	500,000	1	과 목	예산(안)	기정예산	산술기초	문화예술 진흥비	49,366,237	48,866,237	500,000	관광 및 국제교류	1,732,147	1,232,147	500,000	국제교류	1,331,232	831,232	500,000	국제교류	1,331,232	831,232	500,000	출연금	500,000	0	500,000	<p>○ 서울특별시에서는 5억 원을 출연하도록 되어있음.</p> <p>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출연금 총규모는 61억 원으로 서울시 자치구에서 5억 2천만 원 기타 시·도 20억, 기타 시·군·구에서 3,115백만원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음.</p> <p>○ 지방행정 국제화 추세에 부응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영역확대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에서도 출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</p> <p>.....</p> <p>다음은 教育廳轉出金에 대하여 報告드리겠습니다.</p> <p>.....</p> <p>(報 告)</p> <p>1994년도서울특별시일반회계세입·세출제1회추가 경정예산(안)증교육청전출금에 대한검토보고서</p> <p>1. 제안이유</p> <p>이 예산(안)은 1994년 11월 9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4년 11월 10일 소관별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.</p> <p>2. 예산규모</p> <p>가. 세 입 : 없음</p> <p>나. 세 출 : (단위 : 천원)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'94추가경정예산(안)</th> <th>'94기정예산</th> <th>증감액</th> <th>증감비(%)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380,569,075</td> <td>293,126,075</td> <td>87,443,000</td> <td>36.6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3. 예산내역</p> <p>○ 세출예산 (단위 : 천원)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과 목</th> <th>예산(안)</th> <th>기정예산</th> <th>증 감 액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교 육 비</td> <td>380,569,075</td> <td>293,126,075</td> <td>87,443,000</td> </tr> <tr> <td>사 회 교 육</td> <td>365,781,592</td> <td>278,338,592</td> <td>87,443,000</td> </tr> <tr> <td>교 육 바 지 원</td> <td>365,781,592</td> <td>278,338,592</td> <td>87,443,000</td> </tr> <tr> <td>교 원 봉 급 부담금(전출금)</td> <td>201,049,192</td> <td>143,606,192</td> <td>57,443,000</td> </tr> <tr> <td>담배소비세 지원(전출금)</td> <td>158,615,400</td> <td>128,615,400</td> <td>30,000,000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4. 검토의견</p> <p>○ 공립교원 봉급부담금은 지방교육재정 교</p>	'94추가경정예산(안)	'94기정예산	증감액	증감비(%)	380,569,075	293,126,075	87,443,000	36.6	과 목	예산(안)	기정예산	증 감 액	교 육 비	380,569,075	293,126,075	87,443,000	사 회 교 육	365,781,592	278,338,592	87,443,000	교 육 바 지 원	365,781,592	278,338,592	87,443,000	교 원 봉 급 부담금(전출금)	201,049,192	143,606,192	57,443,000	담배소비세 지원(전출금)	158,615,400	128,615,400	30,000,000
'94추가경정예산(안)	'94기정예산	증감액	증감비(%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49,366,237	48,866,237	500,000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과 목	예산(안)	기정예산	산술기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문화예술 진흥비	49,366,237	48,866,237	500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관광 및 국제교류	1,732,147	1,232,147	500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국제교류	1,331,232	831,232	500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국제교류	1,331,232	831,232	500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출연금	500,000	0	500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'94추가경정예산(안)	'94기정예산	증감액	증감비(%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380,569,075	293,126,075	87,443,000	36.6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과 목	예산(안)	기정예산	증 감 액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교 육 비	380,569,075	293,126,075	87,443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사 회 교 육	365,781,592	278,338,592	87,443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교 육 바 지 원	365,781,592	278,338,592	87,443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교 원 봉 급 부담금(전출금)	201,049,192	143,606,192	57,443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담배소비세 지원(전출금)	158,615,400	128,615,400	30,000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